



Korean Tax Newsletter

2024년 10월

CONTENTS

세법 집행기준 개정

- 국세청, 2024 세법 집행기준 개정

예규판례

○ 법원

- 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증세법 제 48 조 제 2 항 제 4 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연구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연구소'를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 업무 미사용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법인세법 §47 의 2) 적용 대상 여부
- 내국법인의 미국법인 발행주식 양도대가가 미국에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
-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같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행정안전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특법상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현장사무실·창고·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 부지로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로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인 투자감면을 받은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및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조특법 §127 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
- 국내법인인 게임 배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게임 개발사에게 게임 출시 전에 지급하는 “Minimum Guarantee”의 소득 구분
-

세법 집행기준 개정

국세청, 2024 세법 집행기준 개정

국세청은 납세자와 종사직원이 세법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세목별 집행기준을 발간하여 꾸준히 제·개정해 왔습니다. 2024.10 월, 국세청은 14개 세목에 대한 집행기준의 개정을 통해 최신 세법령, 대법원 판례, 심판례 및 해석례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반영하고, 조문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법령시스템 관련자료\(2024.10.3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관련자료\(Link\)](#)

○ 법인세 집행기준

- 가상자산 취득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관련조문 신설
-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 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시 취득가액 특례 등에 대한 최근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 집행기준

- 접대비의 명칭변경 반영 및 기부금과의 구분기준 제시
- 비과세 소득의 범위변경
- 배당가산율 변경에 따른 금융소득 계산사례 전면수정

○ 국제조세 집행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 글로벌최저한세 신설 조문 등 개정 사항 반영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 재산의 실질 귀속자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신설
-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구체화 등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반영
- 기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분리 규정 등 최근 개정 사항 반영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 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및 면세요건 명확화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 등 최근 개정 법령 반영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세대 범위 및 종과세율 적용 유예
-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등 최근 개정사항 등 반영

○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 가상자산 압류 및 압류시 체납자 통지규정 신설

-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압류재산 매수 제한
- 양도 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 등에 관한 최근 개정사항 반영

○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금액 변경 및 합산배제되는 부속토지의 추가 등 최근 개정사항 등 반영

예규판례

[법원] 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법 제 48 조 제 2 항 제 4 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패)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 두 54293 판결, 파기환송)

■ 쟁점

구 상속세법 제 48 조 제 2 항 제 4 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 외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사안

학교법인인 원고가 매매 및 신축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다가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을 관계회사에 대여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매각대금이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 제 48 조 제 1 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 2 항 본문은 ‘세무서장 등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 1 호 내지 제 4 호 및 제 5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 4 호(“쟁점조항”)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 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각 들고 있음. 그리고 쟁점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4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 조 제 4 항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에 관하여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문언과 달리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상속세법에는 쟁점조항이 정하고 있는 ‘출연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법령상의 용어 해석에 있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존중하여야 함.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출연’은 ‘금품을 내어 도와줌.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함. 한편, 이 사건 처분 시 시행 중이던 법령은 아니지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 15193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3 조의 2 제 3 항은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 위와 같은 ‘출연’의 사전적 의미와 종전의 규정 내용 등을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당해 재산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한편,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은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문언에 비추어 ‘매각’이라는 관념을 상정할 수 있는 금전 외 현물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금전을 취득자금으로 활용하여 사후에 취득한 재산은 위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그런데도 원심은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 외에도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및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매각대금이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조세심판원] ‘연구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연구소’를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3 지 1631, 2024.7.25., 취소)

■ 쟁점

쟁점연구소는 본점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사안

청구법인은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신소재·신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 그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 획득·이전,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및 식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7.6.1.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소재 서울 강서구 토지(이하 “이 건 토지”)를 각각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8.3.5. 강서구청장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 11 조 제 1 항 제 7 호 나목의 세율(1 천분의 40)을 적용하고,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한 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 78 조 제 4 항(이하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2018.5.18. 이 건 토지 위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지하 3 층·지상 7 층의 건축물(주용도: 교육 연구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을 2019.11.26. 신축하고, 2020.1.22. 강서구청장에게 이 건 건축물 중 연구시설부분(면적비율 92.01%)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1 조 제 1 항 제 3 호의 세율(1 천분의 28) 및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건축물 중 연구시설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면적비율 7.99%)에 대하여는 이를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이하 “쟁점본점용 건축물”)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 13 조 제 1 항의 중과세율(6.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 중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속토지(이하 “쟁점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위 쟁점본점용 건축물과 합하여 “쟁점본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3 조 제 1 항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건축물 중 연구시설부분(부속토지 포함. 이하 “쟁점연구소”)은 법인의 주요한 업무수행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지방세법상 본점의 정의는 없으나 본점의 사무소란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 외에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볼 수 있고, 반면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 두 41832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성상 쟁점연구소의 연구기능은 주요한 업무행위에 해당하며 기획, 인사, 재무 등 관리행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본점으로서 중추적인 의사결정의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나,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조직도 상에서 연구부와 경영관리부문이 구분되어 있으며, 쟁점연구소에는 스크린도어와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경영관리부문의 사무실과 분리하여 경영관리부문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 쟁점연구소 소속 직원만이 이용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 조의 3 제 1 항 제 7 호 및 제 14 조의 4 제 1 호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경우 2019.12.13. 이 사건 건축물로 이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청을 통해 쟁점연구소의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이후 그 인정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연구소의 직원들은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쟁점연구소가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하는 장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연구소를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 13 조 제 1 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 중 2639, 2024.9.11., 기각)

■ 쟁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이를 라이선싱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22.7.16.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a”)와 사이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Patent, 이하 “쟁점특허권”)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License) 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계약에 따라 a는 2022.8.12.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로 미화 000 달러(이하 “쟁점소득”)를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 제 14 조 제 1 항의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2022.9.13. 원천징수분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2023.11.16. 쟁점소득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a 가 신고·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8.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7.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청구인은 한미 조세조약상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 6 조 제 3 항은 “특허 등 제 14 조 제 4 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천지의 판단기준으로 ‘사용지 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사용지의 개념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23 중 7271, 2023.6.7. 등),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 93 조 제 8 호는 특허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지를 국내로 의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 업무 미사용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법인세법 §47의 2) 적용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 2024.9.20.)

■ 질의

[질의 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 (제 1 안)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아님
- (제 2 안)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질의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 47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의 요건(사업의 계속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제 1 안) 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제 2 안)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제 2 안이 타당함

[기획재정부] 내국법인의 미국법인 발행주식 양도대가가 미국에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2024.9.27.)

■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의 발행 주식을 다른 미국 법인에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관련 세액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국에 납부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법인(해당 내국법인이 100% 지분 보유) 발행 주식을 다른 미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미국 법인세 원천징수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발행주식(해당 내국법인이 100% 지분 보유)을 다른 미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미국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해당 소득은 미국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에서 한·미 조세조약 제 12 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 제 57 조제 1 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4, 2024.10.8.)

■ 질의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특칙 §12③(4)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을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실관계

A 법인(종합물류서비스 사업 영위)은 쟁점시설을 착공하여 완공 및 가동. 쟁점시설은 건축법상으로 창고시설에 해당하며, 택배상품 입고 후 보관부터 포장·배송·반품 등 기능을 수행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기획재정부]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같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 질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같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1.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같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다만, 임대인이 해당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

[행정안전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특법상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현장사무실·창고·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 부지로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05, 2024.9.25.)

■ 질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지특법 §78④2.다), 취득한 토지를 현장사무실,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특법 §78⑤)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9862 호, 2023. 3. 14.,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 제 78 조 제 4 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 년간 재산세의 100 분의 35 를 경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5 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 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4 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해야 하며, 같은 법 제 2 조 제 8 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 38 조 제 3 호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 2 조에 따른 공장을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 2 조에서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르도록 하면서, 그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그 부대시설을 “사무실 창고 경비실 주차장 및 수조 저유조, 송유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고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직접 신·증축하여 공장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 다 58901 판결 참조)으로 보아야 함. (...) 취득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지방세특례제도과-1094, 2015.4.17. 참조)임

그렇다면 이 건 토지를 제조시설 부지(이하 “연접지”)에 있는 공장부지로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와 연접지가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건 토지와 연접지가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는 이 건 토지와 연접지의 취득 경위·시기와 활용 현황, 연접지 내 제조시설과 이 건 토지 내 부대시설 간 물리적 또는 기능적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토지와 연접지 간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및 공장용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할 사안임

[국세청]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02, 2024.6.27.)

■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2021.10 월 제조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은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한 후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외국인 투자감면을 받은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및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조특법 §127

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83, 2024.8.8.)

■ 질의

'20~'21 과세연도에 외국인 투자감면을 받은 법인이 '20~'21 과세연도에 「'18~'19 과세연도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및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조특법 §127 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20~'21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 §121의 2에 따른 외투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았으며, '18~'19 과세연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에 대하여 조특법 §127 ③을 적용함으로써 추가공제 금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 내국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은, 「'18~'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는 '20~'21 과세연도에 대한 외투감면과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조특법 §127 ③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추가공제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당초 미공제세액(추가공제금액×외국인 지분비율)의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

회신

2020~2021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 127 조 제 3 항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할 세액에 내국법인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국세청] 국내법인인 게임 배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게임 개발사에게 게임 출시 전에 지급하는 “Minimum Guarantee”의 소득 구분

(사전-2024-법규국조-0012, 2024.9.30.)

■ 질의

국내법인인 게임 퍼블리셔(게임배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게임 개발사에게 게임 출시 전에 지급하는 “Minimum Guarantee”의 소득 구분

■ 사실관계

- 질의법인과 스웨덴 자회사 A 법인은 게임 「DEVELOPMENT AND PUBLISHING AGREEMENT」을 체결함에 따라 A 법인은 개발사(Developer)로서 게임을 개발하고, 질의법인은 퍼블리셔(Publisher)로서 게임을 배포하고 마케팅할 독점 권리를 취득
- A 법인은 게임 개발에 포함되거나 개발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질의법인에게 「게임에 대한 사용, 복사, 판매, 배포, 수정, 마케팅 등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취소·양도 불가능한 권리」 및 게임의 「목적코드와 소스코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복제할 권리」를 부여
- 게임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되기까지 질의법인은 A 법인이 각 마일스톤(목표)을 달성할 때마다 “Minimum Guarantee”(이하 “MG”)를 지급
- 게임 상용화 이후 순수익(Net Revenue)이 발생하면, 질의법인은 A 법인에게 Royalty 로 순수익을 배분 (Revenue Share)하는데, 질의법인은 기지급한 MG 를 회수할 때까지 A 법인에 배분할 Revenue Share 에서 상계함

회신

법인세법 제 93 조 제 8 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이들의 사용을 허용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 93 조 제 8 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함(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이하“A 법인”)이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계약」을 통해, A 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에 포함되거나 개발된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창작물 등)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에 대한 사용, 복사, 판매, 배포, 수정, 마케팅 등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취소·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게임 출시 후에 A법인에게 지급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게임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내국법인이 A법인에게 게임 개발 중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이하“MG”)가 해당 사용료에서 상계되는 경우 해당 MG 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